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강동오 의원)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3-163 |
|----------|-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.

발 의 자 : 강동오, 고병준, 김승수,
남해석, 안미자, 오욱자,
이상원, 이한동, 차해영,
홍지광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되는 마을제를 보전
· 전승시켜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, 지역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
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보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마을제 지원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안 제5조)

3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2) 「문화기본법」 제9조, 제13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11. 17. ~ 11. 2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·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,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마을제”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동 또는 자연 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도당제, 당산제, 산신제,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보전계획 수립·시행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)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1. 마을제 봉행
2.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
3.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

제5조(지정 등) ① 마을제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.

②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【관 계 법 령】

문화기본법

[시행 2021. 9. 11.] [법률 제18379호, 2021. 8. 10., 일부개정]

제9조(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3. 문화예술의 진흥

10. 지역문화의 활성화

제13조(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4조(지원)

제4조(지원)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1. 마을제 봉행
2.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
3.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」에 해당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임신정 |
| 연락처 | 02-3153-8353 |